

**전문가 코칭**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승정현 연구교수

2017 윤리경영  
실현을 위한  
첫걸음

**윤리 연구소**

공유경제와  
B-코퍼레이션 인증제도

**특집코너**

독자들에게  
물었습니다

# 기업윤리 브리프스

# 2017

국내 유일의 기업윤리 월간지  
**2017  
01**



국민권익위원회

▶ 본 월간지의 저작권은 국민권익위원회에 있습니다.

▶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자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www.acrc.go.kr](http://www.acrc.go.kr) ▶ 기업윤리 브리프스

발행일 2017년 1월 1일 (매월발행, 통권49호, 비매품) 발행인 성영훈

발행처 국민권익위원회 구독 신청 044-200-7167

주소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동 민간협력담당관실

# 2017 윤리경영

## 실현을 위한

### 첫 걸음



승정현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연구교수



#### 우리 윤리경영을 가로막는 방해요소는 무엇인가?

OECD는 매년 “한눈에 보는 사회”(Society at a Glance)라는 사회지표보고서를 발간한다. 여기서 눈에 띄는 부분이 “타인에 대한 신뢰”라는 항목이다. 2016년 기준 OECD 국가의 대인신뢰도는 평균 36% 수준이고 북유럽국가들은 60% 이상의 높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다. 한국은 26.6%로서 평균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이것은 가족과 지인 등 특수 관계의 사람들만 믿고 개인적 관계의 바깥에 있는 낯선 사람은 거의 신뢰하지 않는 우리사회의 적대적인 사회문화를 단적으로 말해주는 것이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정부와 제도에 대한 신뢰도도 28%에 불과해 북유럽국가의 절반 이하 수준이다. 최근 대기업과 공직사회의 부정한 유착 관계가 다시 한 번 확인되고, 옥시사태에서 보듯이 기업과 학계가 돈벌이를 위해 많은 사람의 안전조차 무시하는 우리의 현실은 기업이 아무리 윤리경영을 외쳐도 시민들은 별로 믿지 못하는 결과로 이어진다.

개인 간, 조직 간 경쟁이 치열한 저신뢰의 한국사회에서는 규정과 절차를 고지식하게 준수하면 항상 손해를 본다는 인식이 팽배할 수밖에 없다. 공정하고 예측 가능한 법규를 제정하고 집행해야 할 입법부와 행정부에 대한 신뢰도가 낮기 때문에 편법과 위법으로 법망을 피하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한다. 이러한 환경에서 단지 죄를 짓지 않는다는 기업의 소극적 태도만으로는 소비자들에게 감동을 줄 수 없다. 기업이 단순한 수익사업에만 치중할 것이 아니라 사회문제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교육, 병원, 환경, 공공인프라 등의 사업모델에 사물인터넷(IoT)이나 인공지능(AI) 같은 새로운 기술을 더하면 공공문제 해결의 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 사회영향투자(Social Impact Investment)와 같은 ‘착한 투자’가 크게 보면 기업윤리의 제일 중요한 부분일 수 있는데, 우리 기업들은 아직 먼 미래의 일로 생각하는 것 같다. 비록 규제일변도의 법이 양산되는 현실을 감안하여도, 기업이 사회적 책임이나 투명경영 같은 기업의 적극적인 윤리경영을 외면하고 스스로를 준법경영의 틀 안에만 가둔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 윤리경영을 실현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소비자의 입소문은 기업의 존망을 결정할 만큼 무서운 정도로 빠르다. 따라서 훌륭한 기업문화는 특별한 광고나 홍보의 힘을 빌리지 않고도 스스로 자연스럽게 확산될 수 있다.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선입견 없는 진짜 가치인 ‘절대가치’(Absolute Value)라는 표현이 있다. 행동경제학이론을 마케팅에 접목하여 행동의사결정이론을 완성한 스탠퍼드대 이타마르 시몬슨 교수는 다양한 제품의 리뷰, 다른 사람의 사용 후기 등 상품가치를 객관적으로 평가한 절대가치에 따라 소비자들이 구매를 결정한다고 주장한다. 가격과 품질 등 다양한 정보가 실시간으로 소비자들에게 평가되고 공유되는 새로운 정보환경 덕분에 상품이나 서비스의 품질 경험, 즉 절대가치를 훨씬 더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게 되었다. 최고의 상품과 서비스로 절대가치를 실현하는 것만큼 윤리경영도 남들보다 조금 나은 것이 아닌 절대가치로 자리 잡을 필요가 있다.

최저생계비나 최저임금처럼 윤리경영은 “권위 있는 올바른 기준(모범)”이 될 필요가 있다. 영어가 모국어인 사람도 그 언어를 잘못 사용할 수 있다는 사실 때문에 ‘표준영어’(Standard English) 규정을 마련해 읽고 쓰기의 가이드라인을 정한다. 각종 국제기구가 규정하고 있는 부패방지경영이나 사회적 책임 등의 윤리경영시스템이 하나의 사회협약으로 표준화될 필요가 있다. 이제는 정부와 공공기관, 그리고 시민사회가 윤리경영 스탠더드에 대한 활발한 논의를 전개하고 합의의 도출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기이다. 한편, 기업은 교육훈련을 업무성과를 위한 수단이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생각에서 탈피하여야 한다. 교육훈련이 그 자체로 비용이자 투자이기 때문에 기존직원의 교육보다 훈련된 사람을 채용하는 게 효율적이라고 판단하면 경력사원 채용을 늘리기도 한다. 하지만 기업윤리 수준이 천차만별인 우리 상황에서 업무 효율성을 추구하다가 기업범죄라는 최악의 상황에 노출될 위험성도 있다. 따라서 윤리경영의 표준화 문제가 가장 필요한 부분이다.



## NAVEX Global 사가 전망한 2017년 10대 윤리준법 경향

NAVEX Global 사(社)는 사내 직원과 산업 분야 전문가들, 그리고 12,500개 이상의 회원 기업에 근무하는 관련 전문가들로부터 2017년 한 해 동안 윤리준법 경영에 심대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견되는 경향을 종합하여 10가지 예측과 조언을 내놓았다.

### ▶ 준법수익률 계산하기



준법활동(Compliance)이 예방한 손실을 계산할 수 있을까? 준법수익률(Return on compliance; ROC) 산출 기준으로는 준법활동에 의해 감소된 소송 관련 지출 또는 조직문화 개선에 의한 생산성 향상 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물론 수치적 환산이 쉬운 작업은 아니지만, 데이터 활용이 증가하는 추세이므로 이를 통한 수익 계산은 앞으로 더 일반화될 것이다.

### ▶ 다세대 업무환경의 새로운 조직문화

'조용한 세대'(40년대 이전 출생), '베이비 붐 세대'(40~50년대 생), 'X 세대'(60~70년대 생), '밀레니엄 세대'(80~90년대 생), '넥스터 세대'(2000년대 이후 출생)가 공존하는 현 업무환경에서 각 세대 고유의 성향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융합하여 역동적인 조직문화를 형성할 수 있을 것이다. 반면 세대 간 갈등 가능성에 대해서도 충분한 대비가 필요하다.

### ▶ 윤리준법에 정보기술 활용하기

정보기술은 윤리준법 프로그램의 효율성 제고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돌발상황 관리체계에 정밀 보고와 일관된 프로세스 기능을 적용하고, 정책관리에 단일 플랫폼(Platform)을 도입함으로써 업무흐름을 통일하고,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 또한 시각적, 상호적 방식을 윤리준법 교육에 도입하여 교육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 ▶ 산적인 국제 표준 틈에서 살아남기



산더미 같은 지침과 규제들은 큰 부담이 아닐 수 없다. 가장 널리 활용되는 ISO 19600(국제표준기구 준법 경영시스템지침) 외에도 특정 분야에 특화되거나 국가마다 상이한 지침들이 있다.

기업의 윤리준법 프로그램은 다양한 지침을 충족하기 위해 융통성 있게 조정되어야 한다.

### ▶ 윤리준법은 '안 돼'의 동의어가 아니다.

윤리준법 부서는 통상 "안 돼"라고 말하거나 규율을 강요하는 사람들로 비춰진다. 윤리준법의 이미지 쇠퇴를 위해서는 윤리준법 교육 및 절차가 왜 필요한지 최대한 간결하게 설명하고, 윤리준법이 "준법" 경찰이 아닌 경영 파트너로서 도움이 되는 존재임을 강조해야 한다.

### ▶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중요하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수행을 위해 기업은 자선활동, 지역 사회 참여 또는 사회적 책임 준법(CSR compliance)을 채택하고 있다. 최근에는 비즈니스와 지역사회에 동시에 기여할 수 있는 사회적 책임 프로그램이 부각되고 있다. 공급업체와 협조하여 적정 임금수준을 보장하는 것이 한 가지 사례이다. 공익에 기여한다는 헌신의 느낌은 "윤리준법을 따르라"는 명령보다 직원 사기진작에 긍정적임을 기억해야 한다.

### ▶ 내부고발과 관련된 최신 경향

최근 5년간 내부고발 사건에 소요되는 시간이 크게 증가하여 내부고발 동기를 저하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한편 내부고발 조사와 관련하여 미 법무부에서 기업 위법행위 수사 가이드라인으로 배포한 서신(일명 '에이츠 메모')을 충분히 숙지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르면 기업은 수사 협조 요청 시 "모든 관계 자료"를 정부당국에 제시할 의무가 있으며, 기업뿐만 아니라 개인도 위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된다.

### ▶ 사이버 보안과 준법의 역할

사이버 보안 사고는 대부분 인재(人災)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윤리준법 분야에서도 중요하게 다뤄야 한다. 행동강령에 최신 사이버 보안 동향을 반영하고, 사이버 보안 문제가 내부고발 전화(Helpline)를 통해 보고될 수 있는 사안임을 직원들에게 주지시켜야 한다.

### ▶ 윤리준법에 적용될 수 있는 리스크 관리 프로그램

윤리준법 사고의 여파는 치명적이지만 윤리준법 분야에서는 리스크 관리 프로그램이 아직 보편적이지 않다. 리스크 관리 프로그램을 윤리준법에 적용하기 위해 기존 프로그램을 검토하고 관련 전문가 협력을 구하며, 예상되는 문제 목록을 유지하고 직능과 책임이 규정된 리스크 대응 팀을 운영해야 한다.

### ▶ 준법책임관의 증대되는 법적 책임

최근 최고준법책임관(CCO)의 법적 책임 또한 증가하고 있다. 준법책임관의 책임 범위를 한정하기 위해서는 명문화된 규정을 통해 CCO의 권한을 자문에 국한하고, 책임승계 정책(Escalation policy)을 시행하여 CCO의 권한이 순차적으로 승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공유경제(Sharing Economy)와 B-코퍼레이션 인증제도



2008년 하버드 법대 로런스 레식(Lawrence Lessig) 교수가 처음 사용한 개념인 공유경제는 개인이 소유하고 있지만 활용하지 않는 재화나 지식·경험·시간 등의 유·무형 자원을 서로 대어 및 교환함으로써 거래참여자가 적정이윤과 편리함을 얻는 경제 활동방식을 말한다. 모바일 앱과 같은 온라인플랫폼을 기반으로 개인 간 P2P 방식으로 공유자원 거래가 이루어지며, 거래성사에 따른 중개 수수료나 플랫폼 이용료 형태의 수익을 취하는 구조이다. 익명의 타인을 검증할 수 있는 평판시스템 속에서 상호 대어 또는 교환할 수 있는 여분의 자원 공유를 통해 편익을 얻을 수 있다는 믿음이 공유경제를 가능케 하는 핵심요소이다. 공유경제의 대명사는 미국의 차량공유서비스 우버(Uber)와 숙박공유서비스 에어비앤비(Airbnb)다. 특히 우버화(Uberization)는 기존 산업을 ‘공유경제화’한다는 의미를 대신하는 표현으로 통용된다. 2016년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에 참석한 세계 석학들은 곧 찾아올 ‘4차 산업혁명’의 핵심 비즈니스 중 하나가 이 공유경제가 될 것이라고 예측하기도 했다.

### ▶ 공유경제에 대한 예찬론

우버는 2010년 트래비스 칼라닉이 창업하여 18개월 만에 기업가치가 대표적 자동차기업 GM·포드보다 높은 630억 달러를 달성함으로써 기업공개(IPO)를 거론할 수 있게 됐다. 에어비앤비는 255억 달러로 세계적인 호텔 체인들보다 월등히 높은 기업가치가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렌딩클럽(P2P 대출)’, ‘틴더(데이팅)’, ‘저스트잇(음식주문)’, ‘위키피디아(온라인백과사전)’, ‘이노센티브(공동연구개발플랫폼)’ 등도 대표적인 공유경제 스타트업 기업들이다. 공유경제 전문가 레이첼 보츠먼은 “공유경제 서비스는 SNS를 활용한 상호신뢰를 기반으로 작동한다.”고 말했다. 미래학자 제러미 리프킨은 미국인의 약 40%가 이미 ‘공유경제’에 참여하고 있으며 앞으로 협력적 공유사회가 부상할 것이라고 전망한다. 즉, “무료에 가까운 재화 및 서비스”를 사회적으로 공유하는 협력적 공유경제가 이미, 프로슈머(직접 생산하는 소비자), 3D 프린팅, P2P 네트워크,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대안화폐, 재생에너지, 비영리부문을 통해 우리 경제생활에 깊이 들어와 있다는 것이다. 또한 리프킨은 공유경제가 “생태학적으로 가장 효율적이며 지속가능한 경제로 가는 지름길”이라고 예찬했다.

### ▶ 공유경제를 둘러싼 논쟁들

공유경제가 떠오르면서 사회적 논쟁도 뜨겁게 진행되고 있다. 우선 우버화가 가져오는 문제는 기존사업과 이해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실제 우버의 ‘유사택시’ 영업으로 고통받는 택시기사들이 집단으로 반발하고 있다. 두 번째 이슈는 공유경제가 법적 테두리를 벗어날 수 있다는 점이다. 그 중 대표적인 것이 세금문제인데, 일반 개인택시나 회사택시의 경우 면허세, 자동차세 등을 지불하지만 우버는 이 세금을 낼 필요가 없어 불공정경쟁이 이뤄질 수밖에 없다. 마지막으로 법적 규제가 없다는 점이 있다. 공유서비스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자유 계약직이기 때문에, 연금·세금·보험 등의 혜택을 전혀 받을 수 없어 노동시장의 임금 및 노동조건을 더욱 악화시킨다는 지적도 있다.

가장 큰 문제는 따로 있다. 공유경제에서는 수요부진 리스크가 고스란히 계약자에게 전가된다는 것이다. 수요가 없을 때 계약자는 어떤 수입도 올리지 못하고 경기가 좋아져도 기업이익을 공유할 수 없다. 공유경제가 고용증가라는 바람직한 현상처럼 보이지만 어떤 경우 무늬만 자영업자들을 양산해 착취의 대상이 될 위험성도 존재한다. 따라서 투자자들은 공유경제 기업의 상황변화를 예의 주시하며 극히 낮은 인건비에 편승해 고속 성장을 계속할 수 있을지 지켜보고 있다.

## ▶ B-코퍼레이션 인증제도

공유경제 서비스가 참신한 아이디어로 소비자의 호응을 얻고 있지만 기존 상거래 질서나 기업책임을 깡그리 무시한 채 돈 벌이에만 치중하는 것은 기업윤리 측면에서 우려스러운 부분이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미국에서 마련한 베네피트기업(Benefit Corporation)은 '이윤창출과 사회적 책임을 동시에 적극적으로 행하는 기업'으로서 정관에 이 내용이 명시되어야 하고, 백서를 통해 사회적 기여 활동을 발표해야 하며 독립된 인증기관으로부터 그 내용을 인증 받아야 한다. 세계적인 비영리단체 비랩(B-Lab)은 이윤 추구를 넘어 사회적·환경적 수행능력, 기업 운영시스템과 회계의 투명성 등을 기준으로 사회적 책임 수행 정도를 평가하고 '착한 기업'으로 공식 인정해주는 B-코퍼레이션 인증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인증과정은 비랩에서 제공하는 B-임팩트 평가시스템의 180여 개 질문을 거쳐 영어로 진행되는 영상 인터뷰, 직원들의 근로환경과 환경친화성, 기업의 방향성 등을 총체적으로 점검한다. 인증 이후에도 주기적으로 효력 유지를 위한 감사를 매년 실시해야 한다.

소비자들의 윤리의식수준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기업평가가 단순히 제품으로만 평가했던 방식에서 윤리지표들을 통한 총체적인 평가방식으로 바뀌기 시작했다. 결국 기업 활동을 통해 얼마나 많은 사회적인 책임을 다했는지 살펴볼 수 있는 종합성적표가 중요하고 B-코퍼레이션 인증제도가 그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 ▶ 신뢰와 공공성을 회복한 공유경제 수립

공유경제가 이슈화된 배경에는 단순히 경제적 이익이나 기술적 효율성뿐만 아니라 상호 신뢰, 공공성 회복에 대한 기대심리가 크게 작용했다. 그간 공유경제가 얼마나 성장가능성이 높은지 경제적 수익을 강조해왔다면 이제부터는 공유경제가 어떤 가치를 만들어내는지, 그것이 누구를 위한 가치인지 따져보는 충분한 토론과 사회적 합의과정이 필요하다. 결국 공유경제 참여기업도 B-코퍼레이션 인증과 같은 사회적 책임 평가 기준을 충족시켜야 소비자의 선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 플라시보 효과

믿음의 힘을 보여주는 플라시보 효과와 노시보 효과

우리는 믿는 대로 이뤄낸다.

우리가 윤리적 기업/비윤리적 기업이라 믿는다면 우리의 조직은 그렇게 될 것이다.

당신의 믿음은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

### 플라시보 효과(Placebo effect)

약도 독도 아닌 비활성 약품을 약으로 위장하여 환자에게 투여했을 때, 환자의 약에 대한 긍정적 믿음으로 인해 실제로 효과가 나타나는 현상

### 노시보 효과(Nocebo effect)

진짜 약을 줘도 환자가 효과가 없다고 믿으면 약효가 나타나지 않는 현상

청탁금지법

QnA

**Q** A회사(민간기업)의 사외이사로 위촉된 국립대 교수甲(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에게 A회사가 지급하는 월급도 청탁금지법상 수수금지 금품등인가요?

▶ 월급은 사외이사로서의 업무수행에 따른 대가적 성격에서 지급받는 것으로서, 청탁금지법상 수수금지 금품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Q** A회사가 '사외이사 보수 및 활동비 지급규정'에 따라 해외연수비 및 휴양시설이용비 명목으로 甲에게 500만 원을 지급한 경우 청탁금지법상 수수금지 금품등인가요?

▶ 甲이 민간기업인 A회사의 사외이사라 하더라도 '공직자등'으로서의 지위(대학교수)를 가지는 이상,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500만 원 상당의 금품등을 받는 것은 청탁금지법상 허용되지 않습니다.

**Q** 청탁금지법상 甲에게 선물은 얼마까지 할 수 있나요?

▶ 국립대 교수로서의 직무와 관련하여 선물을 주는 경우,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고·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5만 원 이하의 선물을 주는 것은 허용될 수 있으나(제8조제3항제2호), 이러한 목적을 벗어나거나 5만 원을 초과하는 선물을 주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제8조제5항, 제23조제5항제3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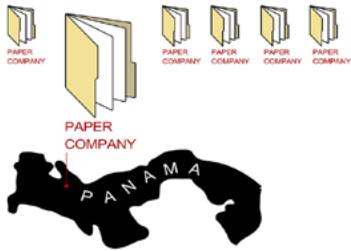
## 다시 돌아보는 2016

2016년에도 기업 윤리경영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하는 많은 사건 사고가 일어났다. 그중에서 우리가 되돌아보고 그 교훈을 잊어서는 안 될 사건들을 뽑아보았다.

### 반부패

윤리경영의 필수 요소 반부패. 2016년에는 국내외 모두 큰 이슈를 남긴 사건이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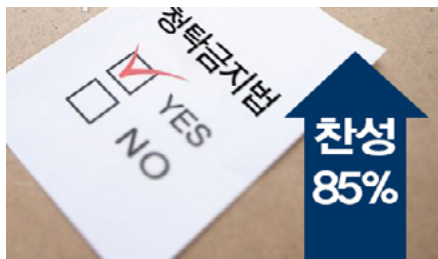
#### ▶ 파나마 페이퍼스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는 독일의 신문사를 통해 파나마의 법률회사 모색 폰세카의 자료를 입수·조사하기 시작했다. 방대한 자료 안에는 세계 각국의 유명인, 정치인, 공직자 등의 조세피난에 대한 내용이 담겨있었다. 이들은 조세회피 의혹에 대해 설명하거나 사과했지만, 그 과정에서 아이슬란드의 총리가 사임하는 등 비판의 목소리는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파나마 페이퍼스에는 한국인도 포함되어 있었으며, 기업인들의 비중이 컸다. 하지만 국내에선 그다지 이슈화가 되지 않았고, 이들에 대한 조사도 해명도 거의 없었다.

#### ▶ 청탁금지법 시행



9월 28일, 청탁금지법이 시행되었다. 법 시행 이후 해석상 혼란, 일부 직종의 불편, 일부 업종의 매출 감소 등 부작용은 있지만, 국회통과 직후 58%였던 청탁금지법 찬성 비율이 법 시행 이후 2개월 만에 85%로 상승하는 등 많은 국민들이 '부패 없는 사회'를 위한 불가피한 대가로 인식하고 있다. 또한 기업들도 양벌규정에 의한 처벌을 피하기 위하여 권익위에서 제공한 가이드라인을 기준으로 이에 대비하고 있다.

### 권위주의

상대를 '을'로만 본다면 권위주의로 인한 부조리는 변치 않을 것이다.

#### ▶ M사 회장 경비원 폭행

M사 회장이 개점 앞둔 자사 프랜차이즈 식당에서 식사한 후 자신이 나가기 전 경비원이 건물 문을 잠갔다는 이유로 폭력을 행사하여 물의를 일으켰다. M사는 '폭행은 없었다'라고 입장을 밝혔으나, 경찰의 조사결과 M사 회장의 폭행이 확인되었다.

M사는 사과문을 게재했지만 진정성 논란이 일었고, 회장이 직접 경비원을 찾아가 사과한 후에야 합의를 이루고 상해죄에 대해서만 벌금 200만 원에 약식기소 되었다.

#### ▶ 젊은 나이에 희망퇴직?

7월, T사는 지역사업부 직원 170여 명에게 희망퇴직 권고 메일을 보냈다. 문제는 해당 부서 직원 중 절반 이상이 20~30대이고, 권고 메일을 받은 이 중 5명은 정규직으로 전환된 지 3개월도 안 된 신입사원이란 사실이었다. 이와 함께 "지역사업부 직원들 대부분이 젊은 층이라 이직을 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말하며 청년층의 취업난을 이해하지 못하는 T사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 특혜

情을 중시하는 사회에서 가장 뿌리 뽑기 어려운 것이 지연·혈연·학연 등에 의한 특혜이다. 관계를 중요시하는 우리도, 중국도 특정인에 대한 특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 ▶ JP모건, 중국 태자당 특채 의혹



지난 2013년, JP모건은 중국 고위층 자녀들을 특별 채용했다는 의혹을 받아 미국증권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받았다. 당시 JP모건의 사장이 본사에 중국 고위층 자녀 채용에 대한 건의 메일을 보냈고 곧 고위층 인사의 자녀들이 특채 명단에 포함된 것이다.

2016년 7월, JP모건이 특채 사실을 인정하고 약 2억 달러의 합의금을 지불하는 것으로 사건은 끝나는 듯했다. 그러나 9월 새로운 혐의점이 발견되어 추가 조사가 이루어졌고, 11월 최종적으로 2억 6,400만 달러를 지급하는 것으로 종결되었다.

### 고객기만

고객은 가장 중요한 이해관계자이지만, 기업이 이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기도 한다.

#### ▶ 가습기살균제 사건



4월 18일, 가습기살균제 판매회사의 사과가 이어졌다. 가습기살균제에 대한 경찰조사가 시작된 것이다. 가장 많은 피해자를 낸 옥시는 뒤늦게 사과문을 발송했지만 조작된 실험 자료를 제출하는 등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아 사람들의 분노를 샀다.

이 사건을 계기로 일상용품 속 유해물질에 대한 이슈가 높아져 해당 유해물질이 들어간 다른 제품군에 대한 조사와 불매운동이 이어지고 있다.

굵직한 사건·사고들은 우리의 뇌리에 강렬한 인상을 남긴다. 그러나 그 사이사이 발생한 사건·사고들도 잊어서는 안 된다. 각각의 사건이 던지는 작은 메시지와 개선점을 잘 수용하지 못한다면 2017년 어두운 이슈의 주인공은 어쩌면 우리가 될지도 모른다.

## 국내동향

### 1 권익위, 기업 반부패가이드 발표

12월 15일, 권익위는 기업들의 청탁금지법 준수를 돕기 위한 가이드를 발표했다. 권익위는 기업의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 반부패 컨트롤타워를 만들어 반부패 활동을 총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밝히며, '계획 수립-규범 마련-실행-협력-평가와 개선' 등 5가지 단계로 나눠 세부 지침을 제시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경영변화에 따른 새롭고 체계적인 반부패활동의 필요성을 느끼지만 구체적인 계획 수립과 실행 방안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에 안내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업 반부패가이드는 권익위 홈페이지(www.acrc.go.kr)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참고: [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379056](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379056)

### 2 2016 대한민국 CSR 필름페스티벌 개최



1월 17일,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을 영상으로 만들어 국민에게 공유하고 CSR 공감대를 넓히고자 대한민국 CSR 필름페스티벌이 개최되었다. 8~10월 '우리 사회의 변화를 만들고 있는 모든 이야기'를 주제로 한 행사에 총 150편, 104개 기업과 비영리단체의 사회적 책임 활동 영상이 접수됐다. 심사결과 국내 최초로 설립된 장애인 표준사업장인 한국타이어의 한국동그라미파트너스가 국무총리상을, CJ 올리브영이 글로벌 나눔 부문을 수상했다.

참고: <http://news.mk.co.kr/newsRead.php?no=804556&year=2016>

### 3 코트라, 임직원 행동강령에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신설

12월 12일, 코트라는 임직원 행동강령에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항을 신설했다. 직장 내 괴롭힘은 상사가 직위, 업무상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부하 직원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훼손하거나 인격을 침해하는 행위이다. 개인·업무·배척 및 고립·기타 등 4개 중분류에 맞춰 8개 세부 유형을 정해 금지시키고 철저한 예방 노력을 펼치기로 했다. 직장 내 괴롭힘은 클린신고센터, 노사합동 고충상담센터 등 사내 공식 신고채널에서 접수·처리한다. 이 중 노사합동 고충상담센터는 노조 측 2명, 사측 1명이 고충처리위원을 맡으며 상담자 신상은 철저히 비밀에 부치고 있다.

참고: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6/12/12/2016121202029.html](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6/12/12/2016121202029.html)

## 국내행사

#### GRI 지정 지속가능성 보고서 작성 실무 교육

주최: 한국표준협회

일시: 2017년 1월 19~20일

장소: 한국표준협회 KSA가산디지털센터

#### 투명한 사회로 가는 길, 청탁금지법

주최: 시장경제교육원

일시: 2016년 2월 1~28일

장소: 서울 공정경쟁연합회

## 해외동향

### 1 일본, 시로 분식회계 뿌리 뽑는다

11월 21일, 일본 최대 회계법인 신일본감사법인은 회계 부정이 끊이지 않자, 회계사의 노하우를 학습하고 기업의 회계 자료 등을 분석해 부정이 의심되는 회계처리를 체크하는 AI 시스템을 2~3년 뒤 실용화할 계획을 발표했다. 신일본감사는 2008~2014년 총 2,248억 엔(약 2조 4,000억 원) 규모의 회계 부정이 적발된 도시바의 외부 감사인으로, 지난해 말 금융청으로부터 3개월 동안 신규 업무 정지와 21억 엔의 과징금 부과 명령을 받았다. 시가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드는 감사 작업을 대신 수행하면 회계사는 기업과 회계처리 논의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참고: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61121500142&wlog\\_tag3=daum](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61121500142&wlog_tag3=daum)

### 2 '배출가스 조작했다 경영난' 폭스바겐, 3만 명 감원 추진



11월 18일, 독일 폭스바겐이 향후 5년간 3만 명의 직원을 구조조정 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폭스바겐의 전 세계 직원 61만 명 중 5% 정도가 실직하는 셈이다. 폭스바겐은 자연 감소와 조기 은퇴를 유도할 계획이고, 대부분 독일 내에서 감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9월 배출가스 조작이 드러나면서 180억 유로, 우리 돈으로 20조 원 이상의 벌금을 내는 등 영업이익률이 떨어져 올해 1.7% 수준에 그치자, 인원 감축을 통해 생산성을 올리겠다는 계획이다.

참고: [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3896573&link=ORI&cooper=DAUM](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3896573&link=ORI&cooper=DAUM)

### 3 브라질 대기업 2곳, 뇌물스캔들로 4조 원대 '벌금폭탄'

세계 각국의 부패관료들에게 수억 달러의 뇌물을 뿌린 브라질 건설사 오데브레시와 그 계열사 브라스캠이 미국, 브라질, 스위스의 공동 수사 끝에 35억 달러(약 4조 2,000억 원)의 벌금을 물게 됐다. 이는 미국이 외국 뇌물사건에 대해 부과한 벌금으로는 역대 최대 금액이다. 이들은 이른바 '뇌물부서'를 비밀리에 운영해 3개 대륙의 부패관료들에게 뇌물을 제공했다. 벌금의 80%는 브라질이, 미국과 스위스는 각 10%를 가져갈 예정이다.

참고: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12/22/0200000000AKR20161222137000009.HTML?from=search>

## 해외행사

#### World Economic Forum Annual Meeting 2017

2017년 세계 다보스 포럼

주최: 세계경제포럼

일시: 2017년 1월 17~20일

장소: 스위스, 다보스

#### 2017 European Business Ethics Forum

2017 유럽 기업윤리 포럼

주최: European Business Ethics Network

일시: 2017년 2월 1~3일

장소: Park Plaza Victoria London, England

## 행사 브리핑

12월 9일 UN세계반부패의 날을 맞아 '대한민국 청렴 컨퍼런스'가 개최되었다. '대한민국 청렴 컨퍼런스'는 청렴문화의 사회 전반 확산을 위한 행사로 투명사회실천네트워크와 국민권익위원회가 공동으로 주최하였다.

오전에는 투명사회실천네트워크에 참여하는 한국투명성기구, 사학연금, 중소기업중앙회 등 45개 기관·단체대표가 모여 'UN 세계반부패의 날 선언문'을 채택하는 기념식과 함께 판소리 청렴공연 등 다채로운 행사를 선보였다.

오후에는 '청탁금지법 시행, 우리사회는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가'를 주제로 종합토론회가 개최되어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우리 사회 각 부문의 변화와 법의 안착을 위해 공공기관과 자치단체, 교육기관, 언론 등이 기울여야 할 노력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이날 행사에서는 투명사회실천네트워크 참여 단체의 우수 청렴 사례를 공유하는 전시회도 운영되었다.

박경호 권익위 부위원장은 기념사에서 "오늘날 국제사회에서 반부패라운드는 국제경쟁력의 핵심요소로 자리 잡았으며, 오늘 선언이 우리 현실을 돌아보고 변화의지를 다지는 디딤돌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 동자들에게 물었습니다

- 1 2016년, 우리 회사에서 가장 주목했던 윤리경영 이슈는 무엇이며,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 2 2017년 윤리경영을 준비하며 가장 중요 포인트로 생각하고 있는 이슈는 무엇인가요?

## 식품유통회사 K 총무

- 1 윤리경영 실천을 다시 한 번 다짐하는 한 해가 되기 위해 윤리경영 전사 활동을 펼쳤습니다. 저희의 경우 윤리경영 선포 후 약 7~8년간은 잘 운영되었고, 모든 임직원이 함께 동참하여 윤리적 문화가 안정되는 것처럼 보였는데, 최근 몇몇 이슈[고객 대응 문제, 협력사로부터 향응 제공 등]가 발생하여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의미에서 부서별로 윤리적 이슈를 도출하고 해결 방안을 제시하여 함께 공유하는 시간을 가짐으로써 점차 예전 모습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 2 2016년 9월 28일 발효된 청탁금지법에 대응하기 위한 교육과 서약 등을 준비하고 글로벌 이슈로 제기되는 윤리적 문제도 고려하고자 합니다.

## 기업연구소 W 책임

- 1 성과평가를 시행하면서 목표 달성으로 인한 압박 때문에 연구소와 구매부서 등에서 일부 정해진 프로세스와 검사 시행을 허위로 진행하여 문제가 발생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궁극적으로 회사의 고객에게 피해가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해당 부서는 물론 전사 윤리교육을 철저히 시행하였습니다.

- 2 각 업무별 프로세스를 검토하고 검증하는 기능을 윤리경영 팀에 부여할 예정이고, 업무에서 발생하는 윤리리스크를 철저히 예방하고 보완하고자 합니다.

## 건설사 M 팀장

- 1 청탁금지법 양벌규정으로 인해 임직원 대상 교육을 어떻게 실시해야 할지 고민이었습니다. 그러나 권익위에서 제공해준 여러 자료를 근거로 기업의 윤리강령 개정 및 임직원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 2 2017년엔 아무래도 청탁금지법과 관련하여 컴플라이언스 시스템 구축이 급선무일 듯합니다. 2016년에 이어 좀 더 체계적인 시스템을 통해 준법문화를 한층 강화할 계획입니다.

## 해외무역회사 S 팀장

- 1 저희는 갑질이 여전히 메인이슈입니다. 올해도 고객의 갑질 때문에 힘들어하는 직원들의 호소가 있었거든요. 사실 고객사나 원청의 갑질에 저희가 할 수 있는 대응은 미비해서 직원들의 고충을 덜어주기엔 부족합니다. 앞으로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계속 고민해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 2 아무래도 청탁금지법이겠죠. 저희는 그래도 해외 무역을 하느라 해외 기준에 맞는 규정을 가지고 있어 그에 대한 보완과 교육만 있으면 되지 않을까 합니다.